##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46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한지아·박정하·서범수

이인선 · 조은희 · 고동진

백종헌 · 김민전 · 김정재

진종오 · 김상욱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가 딥페이크', '초중고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유포', '군인 딥페이크'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편집물이 SNS 를 통해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날로 고도화되는 디지털성범 죄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조항에 편집물을 추가하여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제5항, 제14조의3, 제14조의3제1항).

#### 법률 제 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14조의3의 제목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촬영물 및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을 "촬영물·복제물(복제 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또는 편집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u>④</u> 상습으로 제1항부터 <u>제3항</u>	⑤ 제4항
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제14조의3(촬영물 및 편집물 등
<u>협박·강요)</u> ① 성적 욕망 또	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u>촬영물·복제물(복제물의</u>
<u>복제물을 포함한다)</u> 을 이용하	복제물을 포함한다) 또는 편집
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	물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